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9
----------	------

제출년월일 : 2004.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추가되고,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우리구 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과징금 추가 (안 제3조 제1호)
- 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포상금으로 변경·확대 (안 제4조 제6호,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식품위생법 제71조(2002.8.26 개정)
-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2(2003.8.18 신설)
-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2002.8.26 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다. 기 타

- 1) 임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법 제65조”를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로 한다.

제4조제6호중 “보상”을 “포상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보상”을 “포상금”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4조 제6호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생 략) 1. <u>법 제65조의</u>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4.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u>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u> ----- 2.~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생 략) 1.~5. (생 략) 6.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u>보상</u> 7.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u>포상금</u> 7. (현행과 같음)
제4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u>보상</u>	제4장 ----- <u>포상금</u>
제12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u>보상</u>) ①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 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u>포상금의 지급</u>) 제4조 제6호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